

AI융합진로지원센터운영규정

5-1-73

규정번호	5-1-73
제정일자	2024.7.24
최근개정	2026.2.6
개정차수	1차
관리부서	AI융합진로지원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AI융합진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자유전공 학부 및 학과 학생의 진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과(전공)배정을 위한 진로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
2. 진로 관련 교과,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진로상담을 위한 진로지도교수제 및 전공멘토교수제(A.A.)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02.06.)
4. 진로설정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조교,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AI융합진로지원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의 연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진로지원을 위한 교과, 비교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대학혁신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관련 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.

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73 AI융합진로지원센터운영규정

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(신설 2026.02.06.)

제5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3항, 제4조제8항)